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 선고 2020가단515253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배은서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주식회사 C

변론 종결2021. 2. 5.

판결 선고2021. 4. 2.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563,648원과 그 중 90,916,610원에 대하여 2020. 4. 17.부터 2020. 6. 19.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2020. 3. 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B에게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20. 3. 3. 접수 제328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 1) 원고는 2017. 12.경 피고 B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원리금채무에 관한 신용보증을 하여 주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2)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의 내용으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데 지출한 비용, ③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를 보전, 이전 및 행사하는데 지출한 비용, ④ 미납한 보증료, 추가보증료, 연체보증료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였다.
- 3) 원고는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17. 12. 26. 중소기업은행에게 보증원금을 180,000,000원, 보증기한을 2020. 12. 24., 피보증인을 피고 회사, 대출예정금액을 200,000,000원, 부분보증비율을 90%로 약정한 신용보증서(갑 제1호증의 3)를 발급하여 주었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대위변제

- 1) 피고 회사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7. 11. 30. 90,000,000원을, 2018. 1. 4. 100,000,000원을, 2018. 12. 19. 180,000,000원을, 2019. 2. 27. 81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20. 1. 1. 원금연체의 사고를 일으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 2) 이에 원고는 2020. 4. 17. 중소기업은행에 90,916,610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는데, 원고가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수금은 647,038원이고, 위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로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다. 피고 B의 재산처분과 무자력

1) 피고 B은 2020. 3. 2. 당시 별지1, 2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은행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20. 3. 3. 접수 제328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 B은 2020. 3. 2. 당시 채무초과상태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제2호증의 1 내지 5,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E은행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원금 90,916,610원과 채권보전비용 중 미수금 647,038원의 합계 91,563,648원 및 그 중 위 대위변제 원금 90,916,610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20. 4. 17.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 최후 송달일인 2020. 6. 1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은행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전에는 아직 피고 회사에 대한 원고의 구상금채권과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연대보증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2017. 12. 26.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피고 회사가 2020. 1. 1.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원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신용보증사고로 인한 사전구상권이 이미 발생하였으며, 실제로 원고가 2020. 4. 17.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사해행위 피고 B이 피고 은행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1인에게 채권담보조로 제공하는 행위로서 필연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어 일반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가 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 은행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은행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단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은행은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정권

별지